

주민세(사업소분) 신고·납부 안내문

「8월은 주민세(사업소분) 신고·납부의 달」입니다.

- 개인사업자의 경우 **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,8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납부 대상자**입니다.(면세사업자인 경우 총수입금액)
 ※ 보내드린 납부서의 세액을 **2022. 8. 31.** 까지 납부한 경우 **신고·납부로 간주**
- 매년 7월 1일 현재 부천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(사업소 연면적 330㎡초과하는 경우 1㎡당 250원)을 합산하여 **주민세(사업소분)을 8월에 신고·납부 하여야** 합니다.

- **납세의무자** : 과세기준일(매년 7월 1일) 현재 부천시 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
- **신고·납부기간** : 2022. 8. 1. ~ 8. 31.
- **세액**

* 지방교육세 포함

구분			사업소 연면적	
			330㎡ 이하	330㎡ 초과 (오염물질배출사업소 : 250원/㎡→500원/㎡)
개인 사업자	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	4,800만원 미만	면세	면세
		4,800만원 이상	62,500원 (기본세액)	62,500원 (기본세액) + 250원/㎡
법인	자본금 (출자금)	30억원 이하	62,500원 (기본세액)	62,500원 (기본세액) + 250원/㎡
		30억 초과 50억 이하	125,000원 (기본세액)	125,000원 (기본세액) + 250원/㎡
		50억원 초과	250,000원 (기본세액)	250,000원 (기본세액) + 250원/㎡
		기타	62,500원 (기본세액)	62,500원 (기본세액) + 250원/㎡

- 납부서상 **면적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** 납부기한 내 위택스로 **재신고**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부천시청 **콜센터 문의(☎032-320-3000)**

➔ 세정과 광역동별 담당자 연락처

광역동	담당자	광역동	담당자	광역동	담당자
중동·심곡동	2600	신중동·상동	2602	부천동·대산동	2604
성곡동·소사본동	2601	오정동·범안동	2603		

부천시청 세정과

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

주민세 사업소분 개편!

2021년 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**사업소분**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**8월로 통일**하고 세목을 **단순화**했습니다.

기 존			
구 분	납세의무자	세 율	납부방식
균 등 분	개인 (세대주)	12,500원	부과고지 (8월)
	개인사업자	62,500원	부과고지 (8월)
	법인사업자	62,500원~625,000원	
재 산 분	사업자	250원/㎡ <연면적 330㎡초과>	신고납부 (7월)
종업원분	사업자	급여총액의 0.5%	신고납부



개 정			
구 분	납세의무자	세 율	납부방식
개 인 분	개인 (세대주)	기존과 동일	
사업소분	사업자 (개인·법인)	기본세액 (62,500원~250,000원) + 250원/㎡ <연면적 330㎡초과>	신고납부 (8월)
종업원분	사업자	기존과 동일	

* 지방교육세 포함

신고 납부기간

2022년 8월 1일 ~ 8월 31일

주민세 사업소분

- 과 세 대 상 부천시 내 소재하는 사업소
- 과세기준일 7월 1일
- 납세의무자 부천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*와 법인사업자

*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,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

- 과 세 표 준 사업소 및 그 연면적
- 세 액 기본세액[62,500원~250,000원]+연면적 세율(250원/㎡(330㎡초과시))
- 문 의 부천시청 세정과 주민세팀 ☎032-625-2600~4

신고 납부방법

- ①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(위택스)
- ② 우편,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

구 균등분(개인사업자 법인) 대상자가 기존 신청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는 취소됩니다.

*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구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동봉되며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. (단,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 할 수 있습니다.)

